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24027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462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240277 판결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래

4.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선우

변론 종결2018. 6. 1.

판결 선고2018. 6.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007,740원 및 그 중 91,448,382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 91,289,785원에 대하여는 2017. 11. 2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111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6. 16. 접수 제417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6. 6. 21. 피고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1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7. 6.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② 2016. 6. 21. 피고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금 1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9. 6.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2015. 6.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E은행, F은행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7. 3. 13.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었고 2017. 3. 17. 이자 및 원금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4. E은행에 채무원리금 91,448,382원을, 2017. 11. 24. F은행에 채무원리금 91,289,78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 보증기한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 180,24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1,089,333원이다.

라.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는 2016. 8. 4. 피고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111380호로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는 2017. 6. 13. 피고 D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6. 16. 접수 제41799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007,740원(= 대위변제금 91,448,382원 + 대위변제금 91,289,785원 + 추가보증료 180,240원 + 미회수 가지급금 1,089,33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448,382원에 대하여는 해당 대위변제일인 2017. 8. 4.부터, 대위변제금 91,289,785원에 대하여는 해당 대위변제일인 2017. 1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B의 피고 C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8. 4.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16. 6. 21.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얼마 후인 2017.

3. 13.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는 등 신용보증 부실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 D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피고 C, D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가 피고 C,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그러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B에 대한 진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C, D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D은, 자신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자신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고 B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 상태가 심화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최소 134,699,200원이고 피고 D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인 G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9,700,000원, 피고 C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6.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7. 6.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111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은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6. 16. 접수 제417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오권철

별지